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2015년 새해 첫 번째 인권운동장

[긴급 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의미와 인권운동의 과제

사회 : 박진(다산인권센터)

발제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토론 : 주제준(한국진보연대), 김태연(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윤지혜(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변정필(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15년 1월 13일(화) 오후 3시
인권중심 사람 2층 한터홀

맞서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논리가 아니라 체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1.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논리 구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살펴보자.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검토한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 ‘3.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다루며 남북한의 대립 상황에서 현실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후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다.

‘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을 정리하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분당, 통합진보당의 창당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역사 안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 피청구인의 강령상 목적/ 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 도입 경위/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라.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마. 북한식 사회주의 및 대남혁명전략과의 비교/ 바.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 사. 기타 사건/ 아.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성향을 보건대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6. 피청구인의 해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해산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따진다. “이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다면 우리 헌법의 중핵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으며,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법익 형량)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7.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검토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그리고 정당해산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다.

‘8. 결론’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이름표를 달아준 무엇인가를 “정치영역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이념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한 것이 헌법재판소이기도 하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2. 헌법재판소의 사상적 실천

1) 헌법재판소의 카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검토한 부분을 살펴보면, 결론을 제외한 서술에 사실의 조작이나 왜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실들을 배치하는 맥락이다. 헌법재판소가 기초하고 있는 맥락이 드러나는 부분은 해산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에 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세우는 것은 ‘나치즘’과 ‘폭력’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치즘’을 끌어들인다. “2.6%의 지지율을 보인 군소정당에서 37.2%의 득표에 성공한 제1당으로 변모”하는 데에 불과 4년 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제시하며 “현실정치의 역동적인 성격에 비추어볼 때” 통합진보당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위험성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등치시키는 헌법재판소의 도식은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한다. 냉전의 시대, 자유주의가 반공산주의를 통해 부활해가는 모습 말이다. ‘나치즘=전체주의=공산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어낸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나치즘에 맞선 저항은 사회주의의 것이기도 했다는 역사적 진실조차 사라져버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폭력’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체제에 대한 저항에는 ‘실력적 저항’이 허용되지 않고 체제 내 저항에는 ‘실력적 저항’이 허용된다는 모순적 논리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독점한 물리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저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

‘나치즘’과 ‘폭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이어진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 대한 평가에 기대고 있다. 이때 ‘1당 독재’와 같은 것이 ‘나치즘’과의 연결고리가 되며,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치즘’과 유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 변혁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는 남한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북한’의 본질이 된다. 김정은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음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냥되고 있는 상황”이며 ‘적’이 무슨 말을 해

도 믿어서는 안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며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도 확인되듯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3)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일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해산 여부를 검토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사건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오히려 사회주의 지향성을 가지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호소한다. “피청구인이 개진한 대안체제의 주장이 폐해의 개선이 아니라 극복을 이야기하고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여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급한 대부분의 사실들에 관해 다른 맥락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해산 결정의 문제점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자율적 의사결정원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지적한다. 다만, 그의 극진한 노력은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에 까지 미치지 않는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개인 내지 집단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하여야 할 것이고, 헌정질서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민주주의 원리를 경시하지 않는 한, 공당에 대한 준엄한 질책은 선거라는 정치적 심판을 통해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실이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체제의 논리가 아니라 체제 그 자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펴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한 실천

1) 사라진 민주주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영역에서 배제”한 것의 ‘존재와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

소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자유주의의 본능적 두려움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가난한 자들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로 통용되어 왔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민주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끌어 온 힘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부정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싸워온 성과가 지금 겨우 다다른, 그러나 다시 흔들리고 있는 민주주의다. 권리의 박탈 상태로 내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적 우세’가 점증하는 역설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계급’을 통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 중 하나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 표현의 하나다. 자연스럽게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중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원리”와 다른 이유를 특정한 사람이 주권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듯 말한다. ‘국민주권’과 ‘민중주권’은 당연히 다르다. 그러나 ‘민중=국민-@’와 같은 설명은 불가능하다. ‘민중’과 ‘국민’이라는 개념이 자리한 사상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중’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세워가는 과정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과정 역시 당연히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은 ‘선거’에 민주주의의 힘을 가두는 대신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삭제해간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 ‘주도세력’의 실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적 실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다. 제헌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유’를 덧붙인 것은 놀랍게도 72년 유신헌법이다.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4조 통일 조항에는 ‘자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주체사상이 명시되었다. ‘자유’가 열린 이후, 국제법학자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두 개의 판결”이 있으니 “앞으로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열성적인 인터넷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 당선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북방한계선 등 영토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국정의 포문을 열었고, 국회의원이 포함된 회합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내란음모’라는 새로운 충격을 국정원이 만들어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실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 아래 집결한 수많은 단체들의 역할도 적지 않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수렴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자유주의에 포획 당해왔다. 87년 개정 헌법에 의해 출범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실체”를 안겨준다.(한상희,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제 56호) 헌법재판소는 신중하지 않게 정당해산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정당해산심

판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3)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주의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상이자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연방제도 준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조차 “우리의 경험상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파부침주’의 자세로 ‘개혁의 선봉장’이 되자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개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은 아닐까.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 『반대세의 비밀, 그 은밀한 실체』와 같은 책을 출간한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국정원이 실제적 작성자”라고 검찰이 밝힌 이 책은 ‘진보세력’을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으로 규정하며 설명하는 자료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자유주의의 실천은 전방위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서는 실천은 자유주의의 토대에서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결정문의 보충의견 마지막 문장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다른 인권이 그렇듯 사상은 존재와 본질의 문제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위해 요청되는 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존재와 본질을 걸고 사상투쟁을 했고 “정치(경제)권력의 구조적 불평등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구상”하는 정치적 결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는 한 불가능한 사상이 됐다. 지금 문제는 다원성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이 아니라, 사상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실천하기 위해 관계를 조직할 권리다.

4.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서는 인권운동의 과제

1)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말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다.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 자유를 자유주의에 내줘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응과제가 자유주의 비판에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으나, 강제 해산에 맞서는 공동대응만으로 넘어설 수 없다. 자유주의의 ‘주도세력’이 이미 하고 있듯이, 경제적 질서까지를 포함해 체제의 변혁을 꾀하는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이기도 하다.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에 자유시장경제를 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역사와 현실의 사회주의 체제에 인권침해 현상이 있다고 해서 체제나 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듯 우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승만이 당수로 있던

자유당 기본강령도 “독점경제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라고 했다. “노동자, 농민, 근로 대중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므로 대중의 복리와 권위를 존중하고 주장해서 금력이나 권세로써 이를 좌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 반공의 토대를 다지고 ‘독점경제 패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다가 하야한 이승만 정권조차도 위와 같은 강령을 가지던 것이 해방 전후의 한국사회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면면히 이어졌던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로 오히려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다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87년 이후로, 적어도 97년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주도세력’은 조직되어온 반면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세력은 해산되어왔다는 점을 기억하며, 긴 호흡으로 주도면밀한 실천을 준비해야 할 때다.

미국의 매카시즘과 같은 광풍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남한은 언제나 ‘공안정국’이었고,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말하지 못하게, 들리지 않게, 모이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할 힘을 갖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주도세력’이 가진 조직에 비해 우리의 힘은 조직되어있지 않다. 어떻게 체제에 맞서는 힘을 조직할 것인가. 어려운 숙제다. 숙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저들이 민주주의의 남은 힘을 압살할 것이고, 서두르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남은 힘을 방전해버릴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은 체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체제의 사전적 설명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그 조직의 양식 또는 어느 주권자, 단체, 세력 등이 일정한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배하는 상태”다. ‘체제’를 통해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향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80년대 한국사회 변혁 운동에서 진행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 역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회구성체’는 “사회를 구성되는 것,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관점이 표현되어 있는 말”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함축하는데 “하나는 사회란 완성된 어떤 형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형태로 귀속될 수 없는 이질적인 지대들이 여전히 뒤섞여 공존”한다는 것이다.(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증보판 서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주도세력)이 “한국사회의 기본문제를 자본주의로부터 파생한 문제, 외세로부터의 예속화 문제, 민족분단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분석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언급된 기본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상호작용하는지 인식하는 것에 따라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의 과제는 달라진다.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체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이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NL과 PD라는 낡은 구도를 들어 운동의 흐름을 설명한 것은 그 후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운동 진영의 노력이 사라져왔다는 점의 반영이기도 하다. 적어도, 토론되지 않는 앙상한 인식만 남아 체제의 질서에 충분히 위력적으로 맞서오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같은 탄압은, 적극적으로 규탄할 때조차도 ‘다른 운동’의 문제로 여겨질 뿐이다.

3) ‘체제’를 이해하는 인권운동의 자리

인권운동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과 부문에서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87년 민주화의 영향력 아래, 97년 ‘인권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정권의 수립 이후 ‘인권’의 의제가 확장되어오기도 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는 노동의 문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등 특정한 집단이 처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문제로 주장되고 있다. 동시에 ‘인권’이 부딪친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실천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북한 ‘인권’이라는 점은 대표적인 현상이다. 또한 인권의 실현을 주장하는 우리들 스스로 ‘인권’의 주장만으로 풀기 어려운 심연의 질서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 질서를 이해해가려는 노력이 체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것은 문제들을 위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권운동이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현실의 모습들은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밑재료다.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등 다양한 노동권과 생존권의 요구는 공안기구의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나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실천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압당한다. 뉴라이트 이후로 확장되어 온 민간 우익단체들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종북’ 등의 목표를 정해 혐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세력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전교조 탄압은 청소년을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불온한’ 사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운동에게 주어진 밑재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려는 질서의 ‘존재와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

5. ‘북한’을 우회할 수 없다

1) 남한에 고유한 ‘북한’을 넘어서야

“1958년 진보당이 정당 등록의 취소를 겪고 당수의 사형을 지켜봐야 했던 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배되고 북한의 간섭과 접선했다는 이유에서였다.”(김이수 반대의견) 그 후 평화통일은 헌법이 가리키는 국시가 되었고,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남한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북한’의 ‘존재와 본질’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도세력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체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끊임없이 의문시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사법탄압의 효과적인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 이데올로기 투쟁에서도 이기고 있다. 대중의 순응이나 목인이 자연스럽게 잇따른다. 이와 같은 체제가 유지되는 데에 ‘북한’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세력이 말하는 ‘북한’과, 운동진영의 일부에서 말하는 ‘북한’밖에 없다.

2) ‘북한’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다. 우리는 남한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합은 정세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2013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같이 정세를 판단하는 데에도 체제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당시 국방부는 실질적 전쟁 위협은 없다고

판단했고, 이석기 의원 등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반전평화 캠페인에 힘을 기울였다. 인권운동은, 또는 다른 운동들 역시 ‘북한’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은 우리 체제의 존립을 뒤엎을 수 있는 실체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는 김이수 재판관의 판단은 그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말하기 위해 우회할 수 없는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에서 ‘사회주의’가 배제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력한 전통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며, 다양한 가능성이 봉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한에서 ‘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한의 여러 현실을 통해 창조된다. 1당 독재, 세습독재, 핵무기 보유, 정치범에 대한 탄압, 빈곤 등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회주의를 부정하기 위한 맥락으로만 남한에 유포된다. 같은 사실들을 다른 맥락에 위치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1당 독재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입장 없음’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일당제나 다당제나, 경쟁이나 세습이나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평가의 본질은 ‘민주주의’에 있어야 한다. ‘입장 없음’과 ‘자유주의적 입장’ 사이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3)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운동진영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알려진 ‘종북’은 위와 같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불거져 나왔다. 물론 북의 조선노동당을 추종한다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지만, 특정한 정당을 추종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종북’의 경향을 가진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된 여러 쟁점들이 자유주의적 비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 운동진영의 한계다.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이후 “동의하지 않지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통합진보당을 고립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종북에 대한 자기검열만은 아니다. “동의하지 않지만”의 문제는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에 동조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 변혁노선을 진지하게 다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맥락을 놓쳤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끊임없이 주조되고 강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인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부족한 지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해갈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은 예전보다도 더 큰 힘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권운동이 ‘북한’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다.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종북혐오’를 비판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주도세력이 만들어내는 ‘북한’의 힘은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 힘을 뚫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길은, 인권운동이 조금 더 앞장서야 할 부분일 듯하다.

토론 1. 진보당 해산 이후, 공안 탄압 가속화 그리고 공동 대응

15.01.13 주제준 진보연대 정책위원장

1. 상황 과 진단

1) 총체적 부정 선거로 집권한 박근혜 정권, 집회시위 자유 위축 등 민주주의 위협

- 총체적 부정 선거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위기 때마다 이를 탈출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함.
- 내란음모사건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십상시 문제 등 권력의 암투가 여과없이 세간에 알려지고 그 깊숙이 박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정당해산을 강행함.
- 여기에 세월호 투쟁 과정에서 집회 시위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국가 모독 운운하며 카톡을 검열하는가 하면, 홍성담 화백의 세월 오일 작품 광주 비엔날레에 게재 못한 것으로 보여지듯 표현의 자유도 크게 제약 받고 있음.

2) 진보당 해산, 공안탄압 확대

○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 - 중세 마녀사냥식 판결

-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19일 진보당을 해산하고, 어떠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직을 박탈.
- 현재는 진보당을 해산하며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그 판단근거로 "숨은 목적"이라는 허구적이고 논리파괴적인 논법을 활용
- 이처럼 "숨은 목적" 방식과 기준이 모호한 "주도세력"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권력에 입보인 국민은 그 누구라도 유죄판결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
- 통합진보당은 민족해방(NL)계열이 다수다 → 이들의 과거 활동을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 → 따라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논리의 열개임.
- 어설피고 빈약한 삼단논법이고 각 단계를 연결하는 증거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함.

○ 진보당 해산의 숨은 목적

- 현재의 진보당 해산은 자주 민주 통일 운동 말살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 현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중복세력'이 진보당 주도세력이 됐으므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위헌적이고 구체적 위헌성이 발현됐다고 봤음.

- 상설적 연대체로서 한국진보연대 건설도 북한의 지령의 의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이라면 자민통 운동의 전부를 탄압할 수 있게됨. 이승만 정권 시절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사형했던 것과 같은 논리인 것.
- 한편, 진보당 해산의 또다른 목적은 정권의 위기 탈출이었던 것.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이 확대되자 내란음모사건과 이석기 의원 구속, 진보당 해산 청구를 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위기 때마다 꺼낸 만병통치약이었음.

3) 공안광풍 가속화

- 박근혜 대통령의 진보당 해산을 두고 역사적 결단이라는 언급이 나오자 이를 공안당국은 '지침'으로 삼아 -> 종편, '헌재 결정 반대=중복=진보' ->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비판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 야당을 향해선 "대선 불복보다 심각한 헌법 불복" -> 여당은 헌재 결정 규탄집회에 강경 대응을 주문 -> 검경은 엄단 발표 -> 보수단체들이 10만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검찰 수사착수
- 새누리당은 진보당 보선 출마금지법 추진하며 의원 복귀·대체정당 봉쇄 등 '씨말리기' 후속입법 나서고 검찰은 통합진보당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산 이후 진행된 한국진보연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사관 120여명 동원 "보안법 위반"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음.

4) 공안탄압은 진보진영 전체와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질 것.

- 박근혜 정권의 공안 광풍은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 상설적연대체 구성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진보당 해산 이후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진보연대 집회를 불법화 하면서 진보연대에 대한 탄압을 칼날을 세우고 있음.
- 이러한 공안 광풍은 진보연대를 넘어 진보진영 전체로 확대될 것임. 특히 박근혜 정권의 2015년 핵심 경제정책방향은 "쉬운 해고"임.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 -> 4년을 연장, 저성과노동자 해고 가이드라인 설정, 등 노동유연화 정책 전면화에 있음.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탄압해 들어갈 것.
- 미국의 매카시 선풍에서도 냉전 시기 '미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유명한 매카시즘 역시 297명은커녕 단 1명의 공산주의자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만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데 성공.
- 공안몰이의 목표는 언제나 노동계급의 저항을 분쇄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

위기	상황	대응	결과
국정원 댓글 사건	2013년 6월14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불구속 기소	6월24일 남재준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NLL 포기 논란으로 국면 전환
국기기관 대선개입	2013년 8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 '수사 외압' 증언	9월4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내란음모 논란으로 국면 전환
비선 국정개입 의혹	2014년 11월28일 정윤희 등 비선 국정농단 의혹 확산	12월19일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념 대결로 국면 전환(?)

자료: 경향신문

2. 대응 방향과 공동 사업 제안

1) 대응 방향

- 탄압 확대에 맞선 연대 구축 -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투쟁
 - 아래로부터 반박민주전선 구축 필요성. 민주, 시민사회, 인권 등 인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위의 공동 투쟁 필요함
 - 4.19 / 6.10 등 주요 시점에 대규모 대중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박 민주주의 투쟁 전개

- 민생파탄 맞선 민중연대 투쟁으로, 민주주의 투쟁과 민생투쟁을 결합
 - 진보민중진영의 반박투쟁을 통해 민중연대 강화
 - 민주노총과 함께 중앙 및 지역에서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에 정책에 맞선 대중 투쟁을 전개할 태세를 구축해 나갈.
 - 한중FTA 국회 비준에 맞선 저지 투쟁과 TPP추진 반대투쟁 등을 포함한 식량주권 지키기 사업 전개
 - 이러한 투쟁을 과정을 민주주의 투쟁과 결합 시켜나감.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전개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2) 공동 사업 제안

- 지역 순회 등
 - 제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 간담회 진행

○ 공동투쟁

- 매월 공동집회 등 개최
- 쟁점이 되는 민생, 민주 투쟁 현장에서 진행
- 각 의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 국제연대 사업

- 해외 인권단체들 논평, 성명 등
- 국내 여론화
- 공동 집회 개최 제안

○ (가칭) 민주주의 수호 운동본부 공동 구성

- 1월 28일 4차 원탁회의 개최 예정

토론 3. 국가보안법 체제의 강화와 악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 윤지혜

통합진보당 해산

코리아연대 13명에 대한 소환 조사

신은미 황선 통일콘서트에 대한 매도,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 구속영장신청

검찰, 신은미 황선에 대해 북한의 '영향공작 (Influence Operation)'으로 기소 검토.

검경, 국정원, 종편, 그리고 보수단체 이념적 갈등을 고조시킴. 대통령도 종북콘서트 언급, 진보당해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언급.

종북몰이 등 이념적 갈등을 부각하여 비판세력을 억압, 분열, 고립. 정권의 위기를 돌파함.

공안기관 등은 이후에도 (너무한다는 역풍을 피하는 정도는 조절하며) 적절한 시기에 종북몰이 공안사건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임. 소위 RO사건의 대법판결, 헌재판결문에 적시된바있는 NL그룹들에 대한 탄압. 진보당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

국가보안법 탄압과 종북몰이에 대한 공동대응이 어려운 점.

: 지난 1월 9일 이적단체 선고가 된 젊은벗 단체의 경우 2012년 압수수색-> (16개월 후)2013년에 구성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5년 선고. 된바와 같이 압수수색, (여론몰이), 재판이 끝날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국가보안법탄압을 받으면 개인과 단체는 (긴 재판과정) 어떤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짐. 연대도 초반 사건 성립 시 논평과 공동기자회견 이상의 활동을 같이 하기는 힘든 현실. 당사자의 개별적 돌파.

: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종북몰이의 대표적인 소재가 소멸.

: 현재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기 어려운 점.

보안관찰법 : 진보당해산 직후 전 간부에 대해 14년이 지난 사안으로 보안관찰 통지.

사회단체 홈페이지 등 사찰, 삭제요청.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감청 등 사찰.

이적단체해산과 구성원등의 활동금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악안 가능성.

국가보안법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체계 정비, 조직, 기구 강화.

'종북'이라는 공안적 관념이 '좌파'는 물론 '진보', '노동', '빈민', '소수자' '환경', '평화' 심지어 '인권' 등의 지향에까지도 확산.

그렇다면 무엇을.

토론 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및 인권운동의 과제』 토론문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¹⁾

1. 국제사회의 반응

- 해외언론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보도
- 국제인권 단체에서 반응은 많지 않았다.
-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와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고,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위축에 우려
- ✓ 정당해산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함
- ✓ 독재 종식 후 처음 있는 사건
-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증가 및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언급

-휴먼라이츠와치(HRW)

- ✓ 국가보안법을 폭넓게 적용해 시민권과 정치권을 위축
- ✓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흐름은
 - ✓ 민주화된 이후 첫 정당해산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 ✓ 국가보안법의 연장선에서 우려를 표했으며
 - ✓ 앰네스티와 다수의 언론은 내란음모 사건과의 연계에서 정당해산을 파악하고 있었다.

2. 국제기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국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유권규약 제19조 3항

국가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아래서 표현의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허용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2) 한국 정부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1992)²⁾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국가 안보의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규약 제1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한국 정부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2006)³⁾

“이 법률, 특히 제7조에 의한 기소가 지속되었음을 우려한다. 본 규약은 단지 적과

1) 본 문서는 함께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거친 메모입니다.

2) UN Doc. CCPR/C/79/Add.6, 1992년 7월 29일 para.9

3) UN Doc. CCPR/C/KOR/CO/3, 2006년 11월 2일, para 18.

일치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동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344)

“자유권규약의 제19조 3항을 이용해 다당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 고문, 생명의 위협, 살해와 같은 형태를 포함해서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제 19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해산과 관련된 국제기준으로는 자주 언급되었던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이 있다.

베니스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해산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위험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

주 발제문에서 헌법의 논리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국제인권기준을 다루는 단체와 기구들도 비슷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잣대를 갖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을 다루는 단체와 기구는 기본적으로

- 1) 국가의 주권 및 국가 안보를 유지해야 할 필요와 권리를 인정하고,
- 2)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입장을 표명한다.
- 3) 아울러 ‘폭력’ 사용의 옹호 또는 실제 폭력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번역의 문제와 맥락의 차이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준을 따라가면서도 국제인권단체에서 입장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여부에 따른 차이이다. (판결문 번역 - 번역 후 증거의 객관성 - 증거에 대한 해석과 이해..꼬리에 꼬리를 달고 무는 의문들이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7조로 접근. 예. 박정근.신은미.황선 사례)

4) 일반논평 34. 제네바, 2011년 7월 11-29일) prara21.

5) Guideline 3. Prohibition or enforce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may only be justified in the case of parties which advocate the use of violence or use violence as a political means to overthrow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hereby undermining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constitution. The fact alone that a party advocates a peaceful change of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sufficient for its prohibition or dissolution.

Guideline 5. The prohibition 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s a particularly far-reaching measure should be used with utmost restraint. Before asking the competent judicial body to prohibit or dissolve a party, government or other state organs should assess, having regard to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whether the party really presents a danger to the free and democratic political order or to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whether other, less radical measures could prevent the said danger.

3.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는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고무줄처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적용, 안보를 내세운 운동에 대한 탄압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고강도의 탄압이 될 것인지 저강도(괴롭힘)의 탄압으로 이루어질지 정도의 차이라고 보인다. 안보와 사상의 자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같은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맴돌게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건은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쳤으므로 자유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4. 고민들

1)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대중적 운동/시민의 운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안보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대중적 운동 또는 시민의 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당사자들을 넘어서는 지지와 연대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연결될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이지만,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2) 자유주의적 접근을 벗어나는 운동(캠페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중복으로 덧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계와 선긋기가 있다. 그러나 막상 운동(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순은 있다.(예. 이적라디오, 내란음모 구속자 가족과 나눈 이야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된다. 정부를 비판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실제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부각시켜야 한다는 강박과 이 강박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관용을 넘어서는 운동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다.

3) 북한에 대한 토론의 공청회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 인권에서 인권운동의 목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중복 담론을 넘어설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